

특약변경보고서

1. 약관명 : 『 **건설애(愛)통장** 』 특약
2. 변경의 필요성 : 건설근로자 공제회 요청에 의함
3. 주요 변경 내용 : 상품명 변경
4. 신규 조문 대비표 : 하단 참조
5. 시행(예정)일자 : **2019년 1월 18일**
6. 사후보고 근거 : 은행업감독규정 제86조의 2. 이용자의 권익 확대를 위한 약관 변경
7. 상품의 특징 : [첨부] 참조
8. 약관본문 (전체) : [첨부] 참조
9. 기타 참고사항 : [첨부] 참조

